

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1월 5일
- 회부일자 : 2009년 1월 6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『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 심의위원회』에서 결정한 충청북도 교육위원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- 지방자치법 시행령[일부개정 2008. 10. 8 대통령령 제21075호]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1,850,000원에서 월 2,180,000원으로 함. (안 제3조제1항)
- 별표 1(국내여비 지급 기준표) 비고란의 제3호 규정을 신설함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충청북도 교육위원의 2009년도 의정비가 결정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정활동비 1,800만원(월150만원)과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2,616만원(월 218만원)을 지급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※ 2008년 월정수당 : 2,220만원(월 185만원)

- 결정된 의정비 4,416만원(의정활동비 1,800만원+월정수당 2,616만원)은 전년대비 396만원(9.85% 인상, '08년 4,020만원) 증액된 것이나 행정안전부 기준액 보다 5.7%('09년 기준액 4,683만원) 적은 금액으로 타 시·도 교육위원의정비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의정비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별 첨 : 시도별 교육위원 의정비 책정 현황

붙임 :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<별첨>

시·도별 교육위원 의정비 책정 현황

(단위 : 만원)

시·도	결정 기일	'09년 기준액	'08 의정비		'09 의정비		'08대비 (%)	기준액 대 비	결정 사항
충북		4,683	의 정 비	4,020	의 정 비	4,416	9.85%	-267	
		1,800	의정활동비	1,800	의정활동비	1,800			
		2,883	월 정수당	2,220	월 정수당	2,616			
서울		5,475	의 정 비	5,040	의 정 비	5,040	0.0%	-435	동 결
		1,800	의정활동비	1,800	의정활동비	1,800			
		3,675	월 정수당	3,240	월 정수당	3,240			
부산		5,216	의 정 비	4,448	의 정 비	4,448	0.0%	-768	동 결
		1,800	의정활동비	1,800	의정활동비	1,800			
		3,416	월 정수당	2,648	월 정수당	2,648			
대구	11. 28. 17:00	5,191	의 정 비	4,344	의 정 비	4,344	0.0%	-847	동 결
		1,800	의정활동비	1,800	의정활동비	1,800			
		3,391	월 정수당	2,544	월 정수당	2,544			
인천	11. 25.	5,373	의 정 비	4,678	의 정 비	4,678	0.0%	-695	동 결
		1,800	의정활동비	1,800	의정활동비	1,800			
		3,573	월 정수당	2,878	월 정수당	2,878			
광주	11. 28. 14:30	5,016	의 정 비	3,864	의 정 비	4,373	13.2%	-643	
		1,800	의정활동비	1,800	의정활동비	1,800			
		3,216	월 정수당	2,064	월 정수당	2,573			
대전	11. 28. 16:00	5,197	의 정 비	4,200	의 정 비	4,704	12.0%	-493	
		1,800	의정활동비	1,800	의정활동비	1,800			
		3,397	월 정수당	2,400	월 정수당	2,904			
울산	11. 27.	5,058	의 정 비	4,730	의 정 비	4,730	0.0%	-328	동 결
		1,800	의정활동비	1,800	의정활동비	1,800			
		3,258	월 정수당	2,930	월 정수당	2,930			

시·도	결정 기일	'09년 기준액	'08 의정비		'09 의정비		'08대비 (%)	기준액 대 비	결정 사항
			의 정 비		의 정 비				
경기		5,469	의 정 비	5,421	의 정 비	5,421	0.0%	-48	동 결
		1,800	의정활동비	1,800	의정활동비	1,800			
		3,669	월 정 수 당	3,621	월 정 수 당	3,621			
강원		4,565	의 정 비	4,000	의 정 비	4,000	0.0%	-565	동 결
		1,800	의정활동비	1,800	의정활동비	1,800			
		2,765	월 정 수 당	2,200	월 정 수 당	2,200			
충남	12.30. 결정 공포	4,862	의 정 비	4,003	의 정 비	4,434	10.7%	-428	
		1,800	의정활동비	1,800	의정활동비	1,800			
		3,062	월 정 수 당	2,203	월 정 수 당	2,634			
전북	11. 28. 11:00	4,582	의 정 비	4,002	의 정 비	4,002	0.0%	-580	동 결
		1,800	의정활동비	1,800	의정활동비	1,800			
		2,782	월 정 수 당	2,202	월 정 수 당	2,202			
전남	12. 17. 2차회의	4,442	의 정 비	3,903	의 정 비	3,903	0.0%	-539	동 결
		1,800	의정활동비	1,800	의정활동비	1,800			
		2,642	월 정 수 당	2,103	월 정 수 당	2,103			
경북		4,633	의 정 비	4,095	의 정 비	4,095	0.0%	-538	동 결
		1,800	의정활동비	1,800	의정활동비	1,800			
		2,833	월 정 수 당	2,295	월 정 수 당	2,295			
경남	12. 08.	4,913	의 정 비	4,351	의 정 비	4,351	0.0%	-562	동 결
		1,800	의정활동비	1,800	의정활동비	1,800			
		3,113	월 정 수 당	2,551	월 정 수 당	2,551			
제주	12. 07.	4,311	의 정 비	4,512	의 정 비	4,788	6.1%	477	
		1,800	의정활동비	1,800	의정활동비	1,800			
		2,511	월 정 수 당	2,712	월 정 수 당	2,988			